

상속채무, 파산 통한 정리도 가능



박 규 히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채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해 단순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다.

법적인 상속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거나, 상속과정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상속자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나 한정승인(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 부담을 지는 것) 등을 논의해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잘 모르거나, 채무 파악이 어렵고, 도와줄 변호사가 없을 경우 뒤늦게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단순상속 또는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상속채무가 매우 많고, 채권자들도 다수일 경우 상속재산과 산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

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제307조)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뒀다. 상속재산과 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해 채무조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대표로서 연대보증한 회사 채무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회사의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아버지가 부담했던 연대보증채무도 점점 증가하는 중이다. 다행히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한정승인을 택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도 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도 있어서 그 가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 분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불안함에 A에게 채권변제

를 앞다퉈 독촉하는 중이다.

물론 A는 임의매각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분배하는 청산과정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A가 임의대로 청산을 진행하다가 채권비율대로 배당이 되지 못했거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들의 권리가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민법 제1038조). 물론 청산과정에서 직접 채권자들과 연락해야 하는 것 역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는 상속재산과 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과 산절차와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의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A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상속재산과 산절차는 일단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환가 및 배당 과정을 모두 파산관재인이 총괄하게 된다. A가 더 이상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배당률 계산 등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갈라치기 연금



기자 수첩
안 승진
(금융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별 차등화'가 등장했다. 연금보험료율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기간이 긴 청년세대와 보험료를 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성세대에 차등을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세대별 차등화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청년세대에게 이례적으로 호응을 얻었다. 고령화 및 출생율 감소로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 성장기의 수혜를 본 기성세대가 그 부담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세대별 차등화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전례가 없고, 연금 소득이 없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와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발이다.

세대 간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각에서는 '갈라치기'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짊어진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정부

보기는 어렵다.

가파른 출생율 감소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치권은 '표 싸움'을 위해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제는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켰다면, 오늘은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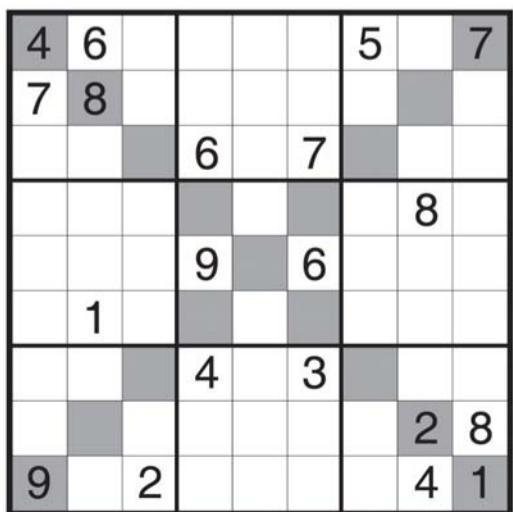
결국 '갈라치기' 또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켜야 할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반대로 갈등을 부추기면서 등장한 표현이다.

연금개혁 없이는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본연의 역할인 계층 간 격차 완화, 노인빈곤의 해소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정쟁과 표심을 뒤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asif1231@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서



김상회의四季

중화는 삶의 지혜



월요일 병자일丙子日 백露白露가 지났으니 갑진년甲辰의 계유월癸酉이다. 명리십간命理十干에서 수화희상제 水火希相濟하니 병화丙火가 임수壬水를 만나고 임수가 병화를 보면 귀责를 말할 수 있다. 강휘상영江暉相映 강물과 헛빛이 반짝이며 비주어지니 충성심과 복종심이 두터우므로 조직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임壬과 병丙에 목木이 통관通貫하면 귀명貴命이 될 수밖에 없다. 병화는 임수를 만나 기뻐하는데 계수癸水는 빛을 가리는 구름과 같아 꺼린다.

이때 임수壬水는 통근通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로 병화일주는 일 년의 계획에서 7월 廿申월에 결실을 거의 마무리했어야 함이다. 부족함이 있다면 8월 계유월 癸酉月를 보내고 9월 갑술월 甲戌月를 기대하면 될 것이다.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사주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주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팔자에서 대부분 어떤 기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또 어떤 특징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모자라거나 없는 글자가 많다. 이를 두고 사주를 나쁘다 좋다로 논하기는 어렵다. 부족하고 넘치는 기운을 취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명리학 고전에서는 말한다.

예로부터 삶에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충돌이 생길 때 중용을 지표로 삼았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 준다는 철학이다. 명리학이 중요하게 추구하는 중화는 결국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균형과 조화는 삶의 근원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는 데는 팔자학에만 국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덜어내고 채우라는 말인가. 그런저런 연유로 흐름수 부적 기도 적선 공덕 기다림 등 방법을 찾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5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161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